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보훈부의 보훈정책 총괄 및 기획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장 밑에 정책관등 1개를 신설하면서 보훈정책실장 밑에 설치한 정책관등 1개를 폐지하고, 보훈정책실장이 분장하던 보훈정책 총괄 업무를 기획조정실장이 담당하도록 조정하며,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보훈정책실 1개 과를 폐지하면서 정원 3명(3급 또는 4급 1명, 5급 1명, 6급 1명)을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보훈정책실장이 분장하던 보훈관련 국제협력 업무를 기획조정실장이 담당하도록 조정하며, 보훈단체의 수익사업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보훈단체협력관 밑에 1개 담당관을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는 한편, 보훈정책 및 국제협력 업무 조정을 반영하여 보훈정책실을 보훈문화정책실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4. 8.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국가보훈부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2024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8. 5. ~ 8. 12.)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제9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조제1항에 따라 기획조정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정책기획관으로 하며, 정책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정책기획관은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조제3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제4조제4항(중전의 제2항) 중 “기획재정담당관·혁신행정담당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을 “기획재정담당관·혁신행정담당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국제협력담당관”으로 한다.

제4조제5항(중전의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 제5호 및 10호를 각각 제14호부터 제16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6호부터 제9호까지를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부 내 각종 정책과 주요 업무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2. 대통령 지시사항 및 국정과제의 점검·관리
3.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 및 중장기 발전전략의 수립·종합 및 조정
4. 부 내 정책 및 제도의 분석·관리
5. 부 내 정책연구용역의 총괄·조정
6. 부 내 정책 관련 연구 또는 자문을 위한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및 관리·감독
7. 부 내 제도개선 과제의 발굴·추진
8. 부처 협업과제의 발굴 및 협력체계의 구축·운영
9. 국가보훈위원회의 운영·관리

제4조제6항(중전의 제4항)제12호 중 “소관”을 “소속기관 및 소관”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국제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훈과 관련된 국제 교류·협력 업무의 총괄·조정
2. 외국의 정부 및 단체 등과의 보훈과 관련된 업무협회의 총괄
3. 외국의 정부 및 단체 등과의 보훈과 관련된 정보의 교환·수집·분석 및 국제보훈학술회의 추진에 관한 사항
4. 외국의 정부 및 단체 등과의 보훈과 관련된 공동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5. 외국의 정부 및 단체 등과의 보훈과 관련된 국제기구의 설치 및 다자회의체의 참여·협력

6. 유엔참전국 참전용사 관련 현지행사 및 국제추모행사 등 추진에 관한 사항

7. 유엔참전국 참전용사 관련 공적의 발굴·포상 및 초청 등 예우·지원에 관한 사항

8. 유엔참전국 참전용사 후손에 대한 예우·지원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국제협력 관련 부 내 다른 부서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제5조제2항 중 “보훈단체수익사업관리팀장”을 “보훈단체수익사업담당관”으로, “보훈단체협력담당관”을 “보훈단체협력담당관 및 보훈단체수익사업담당관”으로, “서기관으로, 보훈단체수익사업관리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을 “서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훈단체수익사업관리팀장”을 “보훈단체수익사업담당관”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보훈정책실)”을 “(보훈문화정책실)”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보훈정책실장”을 각각 “보훈문화정책실장”으로 하며, 같은 항 중 “보훈정책관·보훈문화정책관 및 보훈예우정책관”을 “보훈문화정책관 및 보훈예우정책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보훈정책관”을 “보훈문화정책관”으로, “제11호”를 “제18호”로, “보훈정책실장”을 “보훈문화정책실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보훈예우정책관은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3항제19호부터 제30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보훈문화정책실장을 보좌한다.

제8조제5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항(중전의 제6항) 중 “보훈정책실에 보훈정책총괄과·국제협력과·보훈문화정책과·보훈문화콘텐츠과·기념사업과·현충시설정책과·현충시설관리과·예우정책과·국립묘지정책과·보훈기록관리과”를 “보훈문화정책실에 보훈문화정책과·보훈문화콘텐츠과·기념사업과·현충시설정책과·현충시설관리과·예우정책과·국립묘지정책과·보훈기록관리과”로, “보훈정책총괄과장·국제협력과장·보훈문화정책과장·보훈문화콘텐츠과장·기념사업과장·현충시설정책과장·현충시설관리과장·예우정책과장”을 “보훈문화정책과장·보훈문화콘텐츠과장·기념사업과장·현충시설정책과장·현충시설관리과장·예우정책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9항부터 제17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1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중전의 제9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그 밖에 실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제21조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보훈지청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별표 20을 별지와 같이 한다.

국가보훈부령 제1호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국가보훈부령 제29호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3조제1항 중 “디지털소통팀 및 보훈단체수익사업관리팀은 각각 2027년 6월 30일까지 존속한다”를 “디지털

털소통팀은 2027년 6월 30일까지 존속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디지털소통팀장 및 보훈단체수익사업관리팀장”을 “디지털소통팀장”으로, “디지털소통팀장이 보좌하는 사항은 홍보담당관이, 보훈단체수익사업관리팀장이 보좌하는 사항은 보훈단체협력담당관이 각각 분장한다.”를 “디지털소통팀장이 보좌하는 사항은 홍보담당관이 분장한다.”로 한다.

국가보훈부령 제1호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5 조제2항 중 “부8담”을 “부담”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0]

국가보훈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27조 관련)

조직	정원	평가기간
1. 보훈단체협력관 보훈단체수익사업담당관	0명	2027년 6월 30일까지
2. 보훈문화정책실	1명 (고위공무원단 1명)	2026년 3월 31일까지
3. 보훈문화정책실 보훈문화콘텐츠과	5명 (4급 1명, 5급 2명, 6급 1명, 7급 1명)	2026년 3월 31일까지
4. 보훈문화정책실 현충시설정책과	5명 (4급 1명, 5급 1명, 6급 2명, 7급 1명)	2026년 3월 31일까지
5. 보상정책국 심사기준과	5명 (4급 1명, 5급 2명, 6급 1명, 전문경력관 나군 1명)	2026년 3월 31일까지
6. 복지증진국 보훈의료심의관	1명 (고위공무원단 1명)	2026년 3월 31일까지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기획조정실장) ① (생략)	제4조(기획조정실장) ①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②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조제1항에 따라 기획조정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정책기획관으로 하며, 정책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u><신 설></u>	③ 정책기획관은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조제3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② 기획조정실장 밑에 기획재정담당관 · 혁신행정담당관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및 정보화담당관 각 1명을 두며,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 · 과장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④ ----- 기획재정담당관 · 혁신행정담당관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국제협력담당관 ----- -----.
③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⑤ ----- -----.
<u><신 설></u>	1. 부 내 각종 정책과 주요 업무

<u><신 설></u>	<u>계획의 수립 · 종합 및 조정</u>
<u><신 설></u>	2. 대통령 지시사항 및 국정과제의 점검 · 관리
<u><신 설></u>	3.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 및 중장기 발전전략의 수립 · 종합 및 조정
<u><신 설></u>	4. 부 내 정책 및 제도의 분석 · 관리
<u><신 설></u>	5. 부 내 정책연구용역의 총괄 · 조정
<u><신 설></u>	6. 부 내 정책 관련 연구 또는 자문을 위한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및 관리 · 감독
<u><신 설></u>	7. 부 내 제도개선 과제의 발굴 · 추진
<u><신 설></u>	8. 부처 협업과제의 발굴 및 협력체계의 구축 · 운영
<u><신 설></u>	9. 국가보훈위원회의 운영 · 관리
1. 대외기관 협조업무의 총괄 · 조정	<u><삭 제></u>
2. 국정과제 및 공약사항의 점검 · 관리	<u><삭 제></u>
3. 부 내 현안과제의 총괄 · 조정	<u><삭 제></u>
4. ~ 5. (생략)	14. ~ 15. (현행 제4호 및 제5호

6. ~ 9. (생략)	와 같음)
10. (생략)	10. ~ 13. (현행 제6호부터 제9호까지와 같음)
④ 혁신행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6. (현행 10호와 같음)
1. ~ 11. (생략)	⑥ ----- ----- ---
12. 국가보훈부 소관 공공기관 관리 업무의 총괄	1. ~ 11. (현행과 같음)
13. ~ 15. (생략)	12. ----- 소속기관 및 소관 -----
⑤ (생략)	13. ~ 15. (현행과 같음)
<신설>	⑦ (현행 제5항과 같음)
	⑧ 국제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훈과 관련된 국제 교류·협력 업무의 총괄·조정
	2. 외국의 정부 및 단체 등과의 보훈과 관련된 업무협회의 총괄
	3. 외국의 정부 및 단체 등과의 보훈과 관련된 정보의 교환·수집·분석 및 국제보훈학술회의 추진에 관한 사항
	4. 외국의 정부 및 단체 등과의 보훈과 관련된 공동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5. 외국의 정부 및 단체 등과의 보훈과 관련된 국제기구의 설치 및 다자회의체의 참여·협력
	6. 유엔참전국 참전용사 관련 현지행사 및 국제추모행사 등 추진에 관한 사항
	7. 유엔참전국 참전용사 관련 공적의 발굴·포상 및 초청 등 예우·지원에 관한 사항
	8. 유엔참전국 참전용사 후손에 대한 예우·지원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국제협력 관련 부 내 다른 부서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⑥ (생략)	⑨ (현행 제6항과 같음)
제5조(보훈단체협력관) ① (생략)	제5조(보훈단체협력관) ① (현행과 같음)
② 보훈단체협력관 밑에 보훈단체협력담당관 및 보훈단체수익사업관리팀장 각 1명을 두며, 보훈단체협력담당관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훈단체수익사업관리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	② ----- ----- 보훈단체수익사업담당관 ----- 보훈단체협력담당관 및 보훈단체수익사업담당관은 -- 서기관 ----- ----- -----

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생략)

④ 보훈단체수익사업관리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보훈단체협력관을 보좌한다.

1. ~ 6. (생략)

제8조(보훈정책실) ① 보훈정책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②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1항에 따라 보훈정책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보훈정책관·보훈문화정책관 및 보훈예우정책관으로 하며, 보훈정책관·보훈문화정책관 및 보훈예우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보훈정책관은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3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보훈정책실장을

-----.

③ (현행과 같음)

④ 보훈단체수익사업담당관-----
-----.

1. ~ 6. (현행과 같음)

제8조(보훈문화정책실) ① 보훈문화정책실장-----

-----.

② -----
----- 보훈문화정책실장 -----
-- 보훈문화정책관 및 보훈예우정책관 -----
- 보훈문화정책관 및 보훈예우정책관 -----

-----.

③ 보훈문화정책관-----

----- 제18호 -----
----- 보훈문화정책실장

보좌한다.

④ 보훈문화정책관은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3항제12호부터 제2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보훈정책실장을 보좌한다.

⑤ 보훈예우정책관은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3항제30호부터 제41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보훈정책실장을 보좌한다.

⑥ 보훈정책실에 보훈정책총괄과·국제협력과·보훈문화정책과·보훈문화콘텐츠과·기념사업과·현충시설정책과·현충시설관리과·예우정책과·국립묘지정책과·보훈기록관리과 및 공훈심사과를 두며, 보훈정책총괄과장·국제협력과장·보훈문화정책과장·보훈문화콘텐츠과장·기념사업과장·현충시설정책과장·현충시설관리과장·예우정책과장 및 국립묘지정책과장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훈기록관리과장 및 공훈심사과장은 부

-----.

④ 보훈예우정책관은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3항제19호부터 제30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보훈문화정책실장을 보좌한다.

<삭 제>

⑤ 보훈문화정책실에 보훈문화정책과·보훈문화콘텐츠과·기념사업과·현충시설정책과·현충시설관리과·예우정책과·국립묘지정책과·보훈기록관리과-----
----- 보훈문화정책과장·보훈문화콘텐츠과장·기념사업과장·현충시설정책과장·현충시설관리과장·예우정책과장 -----

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⑦ 보훈정책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2. 보훈정책의 중장기 발전전략의 수립·종합 및 조정
3. 각종 보훈정책 및 주요 업무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4. 보훈정책 비전 및 메시지의 관리
5. 국가보훈위원회의 운영·관리
6. 보훈정책 관련 제도개선 과제의 발굴·추진
7. 보훈정책 및 제도의 분석·관리
8. 보훈정책 관련 부처 협업과제의 발굴 및 협력체계의 구축·운영
9. 부 내 정책연구용역의 총괄·조정
10. 보훈정책에 대한 연구 또는 자문을 위한 비영리법인의 설

----.
<삭 제>

립허가 및 관리·감독

11. 정책·제도 관련 부 내 다른 부서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12. 그 밖에 실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⑧ 국제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훈과 관련된 국제 교류·협력 업무의 총괄·조정
2. 외국의 정부 및 단체 등과의 보훈과 관련된 업무협회의 총괄
3. 외국의 정부 및 단체 등과의 보훈과 관련된 국제기구의 설치 및 다자회의체의 참여·협력
4. 외국의 정부 및 단체 등과의 보훈과 관련된 정보의 교환·수집·분석 및 국제보훈학술회의 추진에 관한 사항
5. 외국의 정부 및 단체 등과의 보훈과 관련된 공동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6. 유엔참전국 참전용사 관련 현지행사 및 국제추모행사 등

<삭 제>

<u>추진에 관한 사항</u> 7. 유엔참전국 참전용사 관련 공적의 발굴·포상 및 초청 등 예우·지원에 관한 사항 8. 유엔참전국 참전용사 후손에 대한 예우·지원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국제협력 관련 부 내 다른 부서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⑨ 보훈문화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3. (생략) <신설> ⑩ ~ ⑰ (생략) 제21조(보훈지청) ① <u>보훈지청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u> 다만, 경기남부보훈지청장, 인천보훈지청장 및 경남동부보훈지청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운영하는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할 수 있다.	⑥ ----- -----. 1. ~ 13. (현행과 같음) 14. 그 밖에 실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⑦ ~ ⑭ (현행 제10항부터 제17항까지와 같음) 제21조(보훈지청) ① <u>보훈지청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u> ----- ----- ----- ----- ----- ----- -----.	② ~ ⑥ (생략) 국가보훈부령 제1호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국가보훈부령 제29호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른 총액인건비제로 활용·운영하고 있는 <u>디지털소통팀 및 보훈단체수익사업관리팀은 각 2027년 6월 30일까지 존속한다.</u>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u>디지털소통팀장 및 보훈단체수익사업관리팀장이</u> 보좌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u>디지털소통팀장이</u> 보좌하는 사항은 <u>홍보담당관이, 보훈단체수익사업</u>	② ~ ⑥ (현행과 같음) 국가보훈부령 제1호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국가보훈부령 제29호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 ----- ----- ----- ----- <u>디지털소통팀은 2027년 6월 30일까지 존속한다.</u> ② ----- <u>디지털소통팀장</u> ----- ----- ----- ----- <u>디지털소통팀장이</u> 보좌하는 사항은 <u>홍보담당관이</u> 분장한다.
---	---	---	--

